임종희 객관식 형사법

초판 1쇄 정오표

(2023년 11월 16일 기준)

※ 본 정오표는 2023년 04월 20일 발행된 "임종희 객관식 형사법 초판(2023년) 1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종희 객관식 형사법 초판(2023년) 1쇄 - 정오표

내용 추가 및 오류 수정 (2023년 11월 16일 기준)

2023년 04월 20일 발행된 **임종희 객관식 형사법(초판) 1쇄**의 추가(보완) 내용 및 오탈자 등을 정리한 정오표를 게재합니다. 수정 및 추가된 부분은 위치란에 표기해 두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오내용이 발견되는 대로 본 정오표가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페이지 [위치]	수정사항
p. 36 - 1번	[해설 ③, ②, ④ - 수정 및 교체] ③ (×) → ② (×) ① (○) ② (○) → ③ (○) ④ (○)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문서위조죄가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내국인이 아닌 피고인이 위 영사관 내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경우,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u>없다</u>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5010 판결).
p. 86 - 13번	[해설 ② - 교체] ② (×) 공범에게 보증인지위가 없어도 부작위범에 대한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예컨대, 보증인적 지위가 없는 정부 갑은 산모 乙을 교사하여 을의 영아 병에게 젖을 주지 못하게 하여 병이 아사한 경우에 <u>갑은</u> 부작위범 <u>에 대한</u> 살인죄의 <u>교사범(공범)이 성립</u> 하고, <u>을은</u>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u>정범이 된다</u> .
p. 111 - 1번	[해설 ① - 부분 삭제] ① (○) <u>추상적 사실에 관한 착오의 객체의 착오의 문제이다.</u>
p. 112 - 2번	[해설 ④ - 부분 삭제] ④ (×) <u>추상적 사실에 관한 착오의 객체의 착오의 문제로서, 이에 대한 직접적 판례는 없다.</u>
p. 121 - 2번	[박스 지문 ⑦ - 교체] ⑤ 병원 인턴 갑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환자를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은 과실로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결과 익수환자를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p. 141 - 3번	[해설 ② - 교체] ② (○) 피고인이 깨어진 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 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은 위 피해자로부터 갑작스럽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다가 수세에 몰리자이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맨손으로 공격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병을 가지고 대항한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도 사회통념상 그 정도를 초과한 방위행위로서 상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또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자 동석한 갑, 을 등은 싸움을 제지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대항행위가 야간의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정당방위(제21조 제1항) 또는 야간의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제21조 제3항)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그 정황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제21조 제2항)한 조치는 정당하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80 판결). 결국, 정당방위(제21조 제1항) 또는 야간의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제21조 제3항) 여는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그 정황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는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는 해당한다.

[박스 지문 ⑩ - 교체]
📵 甲은 다른 친구들 앞에서 甲의 전과사실을 폭로하여 명예를 훼손한 乙을 구타하였다.
[해설 ① - 번호 및 내용 교체]
① <u>③</u> ○(2개)은 옳은 지문이나, ⓒ②(3개)은 틀린 지문이다.
➡ ② ①ⓒⓒ(3개)은 옳은 지문이나, ②⑩(2개)은 틀린 지문이다.
© (O) 제10조 제2항
[정답 - 교체]
<u></u>
[해설 ⓒ, ② - 부분 수정]
© (상상적 경합 ○) ➡ © (법조경합의 특별관계 ○)
② (법조경합의 특별관계 ○) ➡ ② (상상적 경합 ○)
[해설 ① - 부분 수정]
 ○ ~ , 가장 무거운 A죄를 가중하면 <u>3년이상 50년 이하</u>가 되는데, ■ ○ ~ , 가장 무거운 B죄를 가중하면 3년이상 45년 이하가 되는데,
[해설 ①, ②, ③ - 추가]
① (×)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역시 피해자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결국, 특수폭행죄가 성립한다. ② (×)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2016, 1, 6, 형법 개정으로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죄)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특수상해죄로 처벌해야 할 것은 아니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단순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결국, 특수폭행치상의 경우에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죄)로 처벌한다면 법정형이 상향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단순상해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③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협박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4항). (참고) 형법상 폭행죄와 협박죄, 존속폭행죄와 존속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러나 형법상 특수폭행죄와 특수협박죄, 상습폭행죄와 상습협박죄, 폭력행위처벌법성 2명 이상 공동하여 폭행죄와 협박죄의 저지른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라 교체]
라. (○) [1]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약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이와 달리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고 본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종전 대법원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 종전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 어,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형)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4 임종희 객관식 형사법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는 한편,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이른바 폭행・협박 선행형)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여 왔음(대법원 2011도8805 판결 등, 이하 폭행・협박 선행형 관련 판례 법리를 '종래의 판례 법리')

[4] 결론: 대법원은 본 전합 판결(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였다. 즉,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약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다시 정의하였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해설 ③ - 교체]

- ③ (○) [1] <u>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u>은 상대방의 <u>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u>로 강력할 것이 <u>요구되지 아니한다</u>. 상대방의 <u>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u>하거나 <u>일반적으로 보아</u> 상대방으로 하여금 <u>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u> 한다.
 - [2]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p. 350 - 10번

[3] 이와 달리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고 본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종전 대법원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 종전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형)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는 한편,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이른바 폭행・협박 선행형)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여 왔음(대법원 2011도8805 판결 등, 이하 폭행・협박 선행형 관련 판례법리를 '종래의 판례법리')

[4] 결론: 대법원은 본 전합 판결(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였다. 즉,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약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다시 정의하였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해설 ④ - 교체]

p. 352 - 12번

④ (○) 피고인은 입양한 딸인 피해자(10세)와 나란히 누워서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를 누르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것인바, 위 인정 사실과 더불어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관계, 피해자의 연령,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단순한 애정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487 판결). 결국, 양부가 취중에 10세의 입양한 딸과 잠을 자다가 다리로 딸의 몸을 누르면서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경우,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지문 ④ - 교체]

④ 단순히 피고인이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p. 353-354 - 13번

→ ④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해설 ④ - 교체]

④ (○) [1]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약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지문 ④ - 교체]
④ 단순히 피고인이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④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약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해설 ④ - 교체]
④ (○) [1]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약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해설 ① - 교체]
③ (×)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는 <u>친고죄이다</u> .
[해설 ① - 기호 수정]
$ \bigcirc (\times) \rightarrow \bigcirc (\circ) $
[정답 - 교체]
<u>*8t</u> 2 → <u>*8t</u> 12
[정답 - 교체]
<u>*</u> 정탑 ② → <u>*</u> 정탑 ③
[해설 ③ 아래 - 추가]
① (×)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이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고 소장의 유효한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도5811 판결). ② (×) 식육식당을 경영하는 자가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광고선전판,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한 경우, '한우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가 식육점 부분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쇠고기에 대한 광고로서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먹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곳에서는 한우만을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시키기에 충분하므로, 이러한 광고는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인 쇠갈비의 품질과 원산지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다(대판1997.9.9. 97도1561). 결국,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기망하여 수입 쇠갈비를 판매한 것을 사기죄로 처벌하였다(고향한우마을 사건).

④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매수인이 그와 같이 초과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기 $\overline{\mathbf{d}}$ 또는 교부받던 $\overline{\mathbf{c}}$ 에 그 사실을 $\underline{\mathbf{c}}$ 게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underline{\mathbf{m}}$ 도인 <u>으로서는 매수인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 매수인의 그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지므로</u> 그 의무를 이행하

6 임종희 객관식 형사법

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건네주는 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에는 <u>사기죄에 해당될 것</u>이지만, 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매매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u>알게 되었을 경우</u>에는 주고 받는 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버린 후이므로 매수인의 착오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불이행은 더 이상 그 초과된 금액 편취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는 없으므로, 교부하는 돈을 그대로 받은 그 행위는 <u>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음</u>은 별론으로 하고 <u>사기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u>(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p. 451

[정답 - 추가]

- 4번

정답 ③

[해설 - 전체 교체]

- ① (×) [1] <u>법률을 해석할 때</u> 입법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되어야 한다.
 -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강취·횡령하거나, <u>사람을 기망하거나</u> 공갈하여 <u>취득한 신용카드</u>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u>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u>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은 <u>강취·횡령,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u>나 직불카드를 <u>진정한 카드로서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u>. 그리고 '기망하거나 공갈 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는 문언상 '기망이나 공갈을 수단으로 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라는 의미이므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배제되어 그들로부터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 [3] 갑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u>피해자 乙을 기망하여 을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뒤</u>, 20여회에 걸쳐 갑의 의사에 따라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므로, <u>을은 갑으로부터 기망당함으로써 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u> 이 사건 신용카드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고, <u>갑은</u> 이 사건 신용카드에 대한 <u>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하였다</u>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이 사건 신용카드는 갑이 소유자인 乙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에 해당하고, 이를 사용한 <u>갑의 행위는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u>(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도10629 판결). 갑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p. 462

- 14번

- ② (○) [1]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의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고, 위양 죄의 관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 절취한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주입하고 비밀번호를 조작하여 현금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일련의 행위는 그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된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결국, <u>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절도죄와 별도로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u>하고, 양자는 <u>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u>.
- ③ (○)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이체를 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절취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위 계좌이체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한 것이어 서 이러한 현금인출이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440 판결).
- ④ (○) 유흥주점 업주가 과다한 술값 청구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 받기로 합의한 다음, 피해자들이 결제하라고 건네준 신용카드로 합의에 따라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에 대한 피해자들의 점유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탈하였거나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u>여신전문</u> 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6도654 판결).

[해설 ③ - 교체]

p. 498

- 10번

③ (×) [1] 금전채무의 이행은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의무의 이행으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법리는,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 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동산 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 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위 와 같은 법리는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자동차 등의 매도 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이와 달리 채무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동산에 관하여 저당권 또는 공장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 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67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결국, 이제 는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한 경우 및 자동차 이중양도의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 교체]

정답 (1) → 정답 (1)(3)

p. 550

[해설 ① - 교체]

- 5번

- ① ⓒⓒⓒ(4개)는 옳은 지문이고, <u>③(1개)만 틀린 지문</u>이다.
- **■** ① <u>¬. с.(2개)은 옳은 지문이나, ∟. ㄹ. ㅁ.(3개)은 틀린 지문이다.</u>

p. 554

[해설 ③ - 교체]

- 8번

- ③ (C)(2)(3개)은 옳은 지문이나. (C)(1개)은 틀린 지문이다.
- **⇒** ③ CC②(3개)은 옳은 지문이나. ⊙(1개)은 틀린 지문이다.

[지문 ③ - 교체]

p. 583 - 2번

③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 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다.

[해설 ② - 교체]

p. 589

- 3번

② (×) [1]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한국조폐공사 사장에게 조폐공사의 쟁의행위·경영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공소사실과 같은 언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 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위 사장이 조폐창을 조기에 통합하기로 결정한 것은 피고인의 위 전화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위 전화행위로 인하여 위 사장의 경영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은 단순한 조언 또는 권고의 성격을 벗어나 조폐공사의 직장폐쇄에 관한 위 사장의 의사 결정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행위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노노법) 제40조 제2항소정의 '간여'에 해당된다(현재 노노법에서는 간여죄가 삭제되었다).

[2] 대검찰청 공안부장인 피고인이 고등학교 후배인 한국조폐공사 사장에게 위 공사의 쟁의행위 및 구조조정에 관하여 전화통화를 한 것이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에서 정한 '간여'에는 해당한다(대판2005.4.15, 2002도3453).

p. 590

[해설 ② - 마지막 줄 수정]

- 4번

② (×) [1] [2] (대판2011.9.08. 2009도13371). 결국,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해설 - 추가]

p. 591

- 5번

① (O) [1] 직권남용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하므 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한 것으로서,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바,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의 독립된 심판권한(헌법 제103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형사소송법 제279조) 역시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권리'에는 해당하나, <u>각 담당재판장과 담당판사는 담당재판부의 논의, 합의를 거치거나</u> 혹은 동료판사들의 의견을 구한 다음.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권한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의 요청 등을 지시가 아닌 권유나 권고 등으로 받아들인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u>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가 담당재판장, 담당판사의</u>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u>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재판관여행위에 해당</u>하나, 재판관여행위가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u>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가 담당재판장</u>, 담당판사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u>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가 담당재판장</u>, 담당 판사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1012 판결).

- ③ (○)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직무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에 근거하여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란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 <u>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u>이 기업관계자들에게 기업 메세나(Mecenat) 활동의 일환인 미술관 전시회 후원을 요청하여 기업관계자들이 특정 미술관에 후원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u>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제3자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u>(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 ④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여기서의 <u>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u>,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u>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u>하고,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판결).

[해설 - 추가]

① (×) [1]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

[2] 피고인이 갑과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을이 갑을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자신만 제지를 당한 데 화가 나서 손으로 을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는 을의 정강이 부분을 양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을의 가슴을 밀칠 당시 을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 내지 순찰근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이와 같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을의 가슴을 밀치는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다고 할 수 없어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들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 ③ (×)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u>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u>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2] <u>감척어선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제3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제3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고</u>, 낙찰받은 후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u>감척어선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u>,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6349 판결).

p. 606

– 2번

④ (×) [다수의견] [1]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보호법익과 보호대상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의 행위 유형에 비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유형은 보다 제한되어 있다. 즉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에 이른 경우를 구성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위력 등에 의한 경우는 그 구성요건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또한,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 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공무방해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처벌조항 이외에 공무의 집행을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받도록 하여야 할 현실적 필요가 적다는 측면도 있다. 그러므로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 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진정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제 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결국, 위력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로 처단할 수 있다.

[해설 - 추가]

- ① (○) [1]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은 반드시 법령에 명시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 [2] 시청 청사 내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소속 공무워 갑과 을이 제지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갑과 을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든 다음 휴대전화를 휘둘러 갑의 뺨을 때림으로써 시청 공무원들의 주민생활복지에 대한 통합조사 및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피고 인의 행위는 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883 판결).
- ② (O) [1]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5조는 위 법에서 규정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 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p. 609 - 5번

- [2] 당시 출동한 갑과 을은 경찰 정복차림이었고.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에게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한 적도 없으며. 당시 피고인은 위 갑과 을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자신에 관한 범죄행위 때문임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 로, 이러한 상황에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그 소속 등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갑의 멱살을 잡고 을을 오른쪽 팔꿈치로 턱을 친 행위는 공무집행방 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 ③ (ㅇ) [1]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고, 한편, **피의자는 진술** 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지만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 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로 공술을 한 경우에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과 달리 반드시 진실만을 말하도록 법률상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u>피의자나 참고인이</u>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u>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u> <mark>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시를 하지 아니한 채</mark>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 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2]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 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행위는, 단순히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자신 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

p. 621 - 1번	[박스 지문 ① - 부분 수정]
	│ │ ①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품에
	➡ ⑦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mark>경중</mark> 에
p. 648 - 6번	[해설 ③ - 교체]
	③ <u>○○(2개)는 옳은 지문이고, ○○○(3개)는 틀린 지문</u> 이다. → ③ <u>○○(2개)는 옳은 지문이고, ○○○(3개)는 틀린 지문</u> 이다.
p. 683 - 2번	[지문 ③ - 부분 수정]
	③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백의 효력이 있다. ➡ ③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mark>자수</mark> 의 효력이 있다.
p. 691 - 2번	[해설 ③ - 번호 및 내용 교체]
	③ ⓒ는 틀린 지문이다.(없다 → 있다)
	➡ ② <u>○</u> ②(2개)는 옳은 지문이고, <u>○</u> ○(2개)는 틀린 지문이다.
	[정답 - 교체]
	<u>▼정답</u> ③ ➡ <u>▼정답</u> ②
p. 708 - 6번	[해설 ① - 번호 및 내용 교체]
	① ○(2개)가 맞는 지문이고, ○(2(3개)가 틀린 지문이다. → ③ ○(2개)은 옳은 지문이나, ○(2(3개)은 틀린 지문이다.
	[정답 - 교체]
	<u>*85</u> ① → <u>*85</u> ③
n 711	[지문 ③ - 교체]
p. 711 - 9번	③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
p. 781 - 25번	[해설 ⑩ - 기호 수정]
	(D) (O)
	[지문 ① - 교체]
p. 789 - 5번	①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내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으나,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해설 ① - 교체]
	①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 제200조의3(긴급체포) · 제201조(피의자 구속) 또는 제 212조(현행범인의 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 (제216조 제1항 제1호).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u>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u> .

	[해설 🗈 - 교체]
p. 863 - 8번	© (○) 진술조서에 기재된 Z의 진술부분은 재전문증거 에 해당한다(○). C가 乙로부터 전해들은 진술은 전문증거 이고, <u>다시 P가</u> C로부터 <u>전해들은</u> Z의 진술부분은 <u>재전문증거</u> 에 해당한다. 또한 <u>C가</u> 乙로 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법정에서 진술하면 <u>전문진술</u> 이고, <u>P가</u> 뛰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C를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C가 乙로부터 들은 위 진술 내용이 기재된 진술조서는 <u>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u> .
p. 869	[해설 ② - 교체]
- 14번	② ①©은 옳은 지문이고, ©©은 틀린 지문이다.
	● ② ①©은 옳은 지문이고, ⓒ②은 틀린 지문이다.
	[지문 ④ - 교체]
p. 889	④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 35번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n 900	[해설 ③ - 교체]
p. 900 - 47번	③ ⓒ(1개)만 옳은 지문이고, ⑤ⓒⓒ(3개)는 틀린 지문이다.
47 1.	➡ ③ <u>○(1개)만 옳은 지문이고, ⊙©</u> (3개)는 틀린 지문이다.